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강득구 · 김주영 · 김태선
서삼석 · 이용우 · 박 정
안호영 · 박홍배 · 허종식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찾아내어”를 “찾아내어 사망,”으로, “범위인지를 평가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을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

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36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7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7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u>찾아내어</u>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u>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u>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u>하여야</u>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u>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u>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 ----- ----- ----- ----- <u>찾아내어 사망,</u> ----- ----- ----- <u>수준인지를 결정하</u> <u>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u> - ----- ----- <u>포함하여</u> ----- ----- ----- <u>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u> <u>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u> <u>한다)하여야</u> -----.
② 사업주는 <u>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u> 한다. <u><신 설></u>	② ----- <u>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u> ----- ----- <u>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u> -----.
<u><신 설></u>	③ 사업주는 <u>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u> 한다.
	④ 사업주는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u>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 설>	<u>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 -----. ⑥ 위험성평가-----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3. ~ 8. (현행과 같음)

⑤ _____

1.

----- 해당한다), 제36
조제2항 · 제3항 · 제4항 전단

2. ~ 16. (현행과 같음)

⑥ _____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18. (생략) ⑦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u> <u>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u> <u>보존하지 아니한 자</u> 3.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